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3. 10 선고 2015가단1887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3. 1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적개황도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85㎡ 및 별지 지적개황도 표시 5, 6, 8, 7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75㎡를 각 철거하고, 위 각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, 나. 연대하여 2015. 11. 12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8,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연주

별지